

조경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기관 또는 단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사무소 소재지				

「조경진흥법」 제6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조경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조경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지정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 규정 1부 3. 교육규정 1부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